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19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 제조사·공급사 : (주)윈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19년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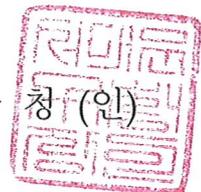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당 사업 예산금액(하드웨어 도입가7%이내, 소프트웨어 도입가12%이내)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8년 11월 일

발 주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 (주)윈스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9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 제조사·공급사 : 익스트림 네트워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19년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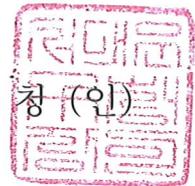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당 사업 예산금액(하드웨어 도입가7%이내, 소프트웨어 도입가 12%이내)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8년 11월 일

발주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 익스트림 네트워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19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 제조사·공급사 : (주)아리시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19년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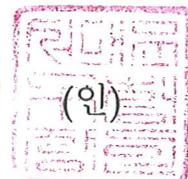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당 사업 예산금액(하드웨어 도입가7%이내, 소프트웨어 도입가 12%이내)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8년 11월 일

발 주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제조사·공급사명 : (주)아리시스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19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 제조사·공급사 : (주)시큐아이 (MF2 3100 *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19년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당 사업 예산금액(하드웨어 도입가7%이내, 소프트웨어 도입가 12%이내)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8년 11월 일

발 주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 (주)시큐아이

